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24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이해식 · 박상혁 · 한민수
양부남 · 차지호 · 서영석
박용갑 · 문진석 · 서영교
박정현 · 차규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둬.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자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u> 1. <u>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u> 2. <u>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u> 3. <u>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u> ④·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③· ④ (생략)	